

# 2021학년도 초등학교 취학업무 추진계획

## □ 근거법령

-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12조 ~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~ 29조

## □ 취학일정

취학아동명부 작성 (읍·면·동장)	입학기일 및 통학구역 통보 (교육장→읍·면·동장)	국·사립초 입학허가자 통보 (학교장→읍·면·동장)	취학 통지 (읍면동장→보호자)	조기입학· 입학연기 신청 (보호자→읍면·동장)
(10. 1기준) 10. 31까지	11. 30까지	12. 10까지	12. 20까지	12. 31까지

## □ 세부 취학 절차 및 일정

- **취학아동 조사[읍·면·동장]**
  - 기준일 : **2020. 10. 1.**
  - 조사대상 : 2014. 1. 1. ~ 12. 31. 출생아동 (만 6세)
- **취학아동 조사 및 취학명부 작성[읍·면·동장] 2020. 10. 31.까지**
- **취학아동명부 열람 기간 : 10일 이상**
- **조기입학· 입학연기[보호자→읍·면·동장] 2020. 10. 1. ~ 12. 31.**
  - 조기입학 신청 대상 : 2015.1.1.~12.31. 출생아동(만5세, 1년 조기입학만 가능)
  - 입학연기 신청 대상 : 2014.1.1.~12.31. 출생아동(만6세)
- **입학기일 등의 통보[교육장→읍·면·동장]**
  - 다음해 취학할 아동의 입학기일과 통학구역을 결정하여 2020. 11. 30.까지 읍·면·동의 장에게 통보
- **국·사립초 취학아동의 통보[국·사립초 학교장→읍·면·동장]**
  - 입학허가자명부를 2020. 12. 10.까지 취학아동 거주지의 읍·면·동의 장에게 통보
- **취학통지서 배부[읍·면·동장→보호자] 2020. 12. 20.까지**
  - 취학아동명부 통보[읍·면·동장→학교장] 2020. 12. 20.까지 해당학교장에게 이송
- **예비소집일 : 2021. 1. 2. ~ 1. 6. 사이**
  - ※ 단, **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** 학교장은 교육장의 승인을 받아 교육감이 정한 **예비소집일 이전에 진행** 할 수 있으며, 변경된 예비소집일을 읍·면·동의 장(교육장)에게 통보 (「의무교육단체 취학 이행 및 독려를 위한 지침」 전라북도교육청 고시 제2019-13호)
- **취학의무의 유예 등[학교장]**
  - 보호자가 질병·발육상태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의무의 유예 등을 신청하는 경우 학교장은 **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**